

「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」 신청 안내문

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「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」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배 경

- 사업장별 온실가스 진단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, 감축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

* 동 컨설팅 사업 실시 결과를 토대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동참유도

2. 컨설팅 개요

- (지원대상)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중 중소기업
- (지원규모) 1개 업체(추가모집)
- (컨설팅 시설)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시설
- (컨설팅 내용)
 - 온실가스 배출시설 목록 작성 및 원단위 조사·분석
 - 배출시설 사용현황 분석,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
 - 현장 기술진단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감축기술 발굴
 -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산정, 시설투자 및 비용절감액등 사업효과 산정
 -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탄소중립 방안 제시

3. 지원방법

- [붙임1]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생누리(www.winwinnuri.or.kr) 신청
 - ※ 문의처(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-590-5619)
- (제출기한) 2025년 9월 26일(금) 18시까지
 - ※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, 기존 지원업체보다 신규 신청업체를 우선 지원함

[제1호 서식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위탁 · 제공 동의서

□ 「탄소중립설비 기술진단 컨설팅」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을 하고자 합니다.

○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, 동의 여부를 체크,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(필수)

[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

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

[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]

· 탄소중립 기술진단 컨설팅 신청 및 지원에 이용

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 탄소중립 기술진단컨설팅 완료 시까지 활용,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□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(필수)

[위탁·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]

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]

· (제공) 환경부, 한국환경공단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]

· (환경부, 한국환경공단) 탄소중립 기술진단 컨설팅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본 “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”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2025 년 월 일

신청업체

(직인)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①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목적	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
	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(만족도 조사)
수집·이용항목	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, 업종,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, 개업일·휴업일·폐업일, 전자계산서 발급액, 전자지급 거래액, 일반연구인력개발비, 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신용카드 결제금액,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, 품목 번호, 총 신고가격, 목적지, 신고일
	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(전화번호, 이메일 등)
수집·이용기관	· 해당 보조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벤처기업부
수집·이용기간	·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

② 기업(신용)정보의 파기

파기대상 정보	·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·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, 이메일 등
파기절차 및 방법	·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,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·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2025 년 월 일
기업명 ○ ○ ○
대표자 ○ ○ ○ (인)

[붙임2] 지원설비 목록

지 원 설 비		지 원 범 위
① 탄소무배출설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
공정설비	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(또는 폐압)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 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예시 폐열회수 보일러, 폐압 터빈발전, 열교환기,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, 증기 재압축장치, 응축수 회수 등
	③ 폐기물 열분해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(가스, 유류)하기 위한 설비
	④ 탄소포집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※ 조직경계 내의 포집·이송설비(이용설비는 제외)를 지원하며,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
	⑤ 연료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예시 보일러, 버너, 로, 건조설비 등 ※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포함
	⑥ 물질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구온난화지수(GWP)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低GWP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(기기) ※ 제품군별 사용 제한 GWP를 만족하는 물질로 변경하는 경우
	⑦ 불소가스 저감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산업 등에서 열,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
	⑧ 기타 공정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~⑦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※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⑨~⑪으로 지원
	전력·연료절감설비	⑨ 인버터
⑩ 인버터 제어형압축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
⑪ 고효율 설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예시 교반기, 모터, 버너, 보일러, 터보압축기, 펌프 등 ※ 보편화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(LED 설비 등),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⑫ 기 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